

17세기 전기 현풍 팍씨 집안의 의생활에 대한 소고

이 은 주

안동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교수

The Costume Culture in Early 17th Century Perspectives Through Excavated Letters of Hyun-Poong Kwak's Family

Eun-Joo Lee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Andong National University
(2001. 9. 13 토고)

ABSTRACT

This paper reveals the costume culture of early 17th century from the study of private letters found in the tomb of Mrs. JinJoo Ha(? - after 1652) excavated in 1989. The tomb was located at *KooJi-myon, DalSung-kun, Kyung-Poong Province*. *Joo Kwak*(1569-1617), Mrs. Ha's husband, didn't have a title from the government, but he was a clan in *HyunPoong* area who had enough land and servants.

However, he didn't live together with Mrs. Ha, his second wife, he had to travel between *SoRye* and *NonKong* where his wife resided.

The 40 or so private letters that contains valuable information that can help us to understand and reconstruct the costume culture of early 17th century in *HyunPoong* area. We believe that these materials contain somewhat general information that reveals costume of *KyungSangDo* area even though the materials are from a specific family.

By accumulating information from real material like these letters, we also believe that it will give us a better understanding on the costume culture in 17th century, *Choson* dynasty. Furthermore, it will certainly help us to reconstruct a more realistic lifestyle of the time.

Key Words : Excavated letters(출토인간), Excavated costumes(출토복식),

Hyun-Poong Kwak clan(현풍 팍씨)

I. 머리말

1989년 4월, 현풍 곽씨 문중에서는 경북 달성군 구지면 도동리 석문산성에 있던 12대 조모, 진주 하씨(晉州 河氏, ?~1652년 직후)의 묘를 이장하였다. 이장하는 과정에서 시신과 함께, 시신을 감싸고 있던 다량의 염습용 의복, 그리고 보공용으로 사용되었던 서간류 등이 출토되었다.

진주 하씨 묘에서 출토된 유물에 대해서는 이미 1991년에 보고서¹⁾가 발표되었다. 최근에는 언간 중심으로 주제별 생활 모습이 발표되고 있으나²⁾ 의생활에 대한 것은 아직 시도된 바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출토된 언간 자료를 토대로 당시 현풍 곽씨 집안의 의생활 모습을 살펴보자 한다.

진주 하씨 묘에서 수습된 대부분의 서간들은 연대가 확실하지 않지만 1602년의 언간과 1652년의 언간이 확인됨으로써 거의 반세기에 걸쳐 쓰여진 생활사 자료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당시 수습된 총 169점의 서간 자료 중 의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은 42점³⁾에 이르는데 남편 곽주(郭澍, 1569~1617)가 부인 하씨에게 보낸 편지와 기타 기록물이 28점으로,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하씨가 쓴 글 3점, 출가한 딸의 편지 10점, 3남인 유창(1615~1673)의 편지 1점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진주 하씨의 묘에서 나온 서간이지만 실제로는 현풍 곽씨 집안의 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들 편지글의 대부분은 17세기 전기 경상도 현풍에서 일어난 일들을 담고 있으므로 의생활과 관련된 내용들 역시 현풍의 실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일상복과 외출복, 제사와 관련된 의례복, 그리고 바느질이나 길쌈, 염색, 옷감 재료를 통한 경제 활동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40여 점의 서간 자료를 통해 의생활의 전반적인 모습을 파악한다는 것은 무리이지만 지금까지 파악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간문의 의생활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여러 문헌과 유물들을 함께 비교·고찰함으로써 17세기 전기 경상도 반가의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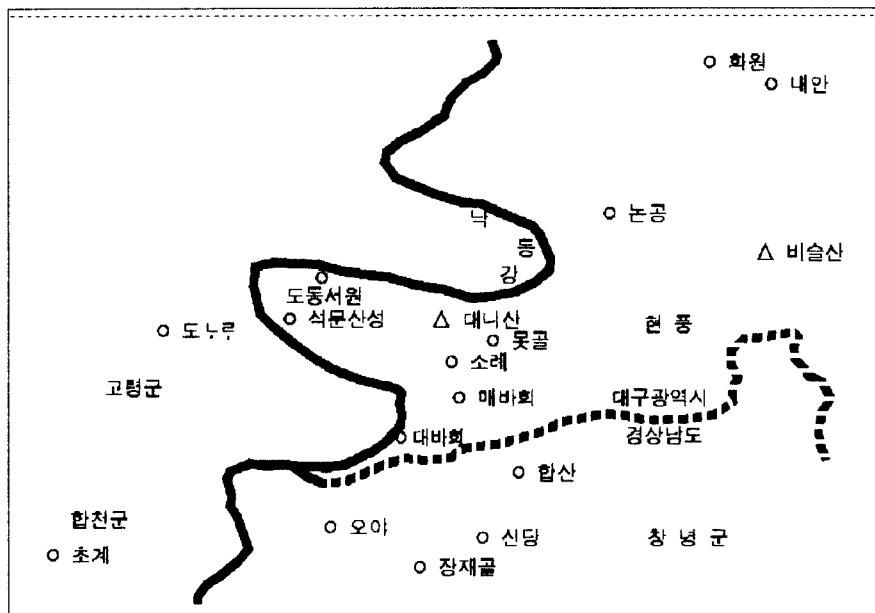
생활 모습을 밝혀보고자 한다.

II. 현풍 곽씨 일가의 의생활 배경과 특징

진주 하씨는 현풍 곽씨 19세손인 곽주(郭澍, 1569~1617)의 두 번째 부인[再室]이다. 홍의장군(紅衣將軍) 곽재우(郭再祐)의 종질이기도 한 곽주는 슬하에 4남 5녀의 자녀를 둔 현풍 지역의 세족(勢族)이다. 곽주의 딸들은 생모를 분간할 수 없지만 족보에 기록이 남아있는 아들들의 생모는 구별할 수 있다. 4남 중 장남 이창(以昌, 1590~1654)만 첫 번째 부인인 광주 이씨의 소생이고 나머지 3남, 즉 의창(宜昌, 1613~1647), 유창(愈昌, 1615~1673), 형창(亨昌, 1617~1674)은 묘주(墓主)인 진주 하씨의 소생이다.⁴⁾

하씨와 장남과의 갈등⁵⁾ 때문에 하씨는 본인 소생의 자녀들을 데리고, 남편이 있는 본가와 떨어진 논공이라는 곳에서 살았다. 남편 곽주는 소례라는 곳에서, 하씨는 논공이라는 곳에서 각기 지내면서 남편이 부인이 사는 논공으로 왕래하는 생활을 하였다(그림 1). 그래서 부인에게 가지 못할 때는 편지를 통해 많은 사연들을 전하였기 때문에 편지 중에는 의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언급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전통사회의 사대부가(士大夫家) 남자들이 의생활을 포함한 가정사에 무관심하고, 그와 관련된 의사결정권을 부인에게 일임했을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곽주가 부인 하씨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볼 때 그와는 전혀 다름을 알 수 있다. 남편 곽주는 전적으로 집안의 의생활 전반에 대한 지휘,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옷감 생산이나 염색, 옷 제작 여부, 제작 시기의 결정 등은 물론, 부인의 머리 치장, 자녀들의 외출복 등, 광범위한 의생활 영역에 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역시 대단히 구체적이다.



<그림 1> 소례를 중심으로 한 광주 가족의 활동 무대(백두현 제공)

언간 <8>이나 <75> 내용을 보면 필요한 옷감의 양을 상세하게 알고 있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분배해야 할 면화 분량까지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자녀들의 외출이나 추위 등을 염려하여 옷을 지어 주라고 당부하는 자상한 아버지로서의 정감 어린 모습도 확인된다.

이러한 구체적이고 사소한 내용들이 편지에 자주 나타나는 것은 이를 부부가 각기 다른 곳에서 기거하고 있었던 탓도 있지만 치밀한 광주의 성격적 특징일 가능성도 있다. 또한 다른 각도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근래에 발표된 한 연구⁶⁾에 의하면 퇴계 이황(1501~1570) 역시 집안 일에 세심하다고 할 정도로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따라서 사소로운 것으로 보이는 일상적인 일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당시 사대부가 남자들의 보편적인 생활방식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반면에 길쌈이나 세탁, 바느질 등 의생활과 관련된 실질적인 노동 부분은 거의 부인을 통해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의생활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은 남성이 했다고 할지라도 의생활을 영위하기 위

한 실질적인 작업에는 역시 부인이나 딸, 또는 며느리, 종, 그리고 주변 이웃 여성들이 동원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언간들은 다음과 같다.

베는 아버님께 편지를 드리니 풍난의 계집에게 짜도록 하였소. 아버님이 내일이나 모래 논공이로 가려 하시니 내일 가실 양으로 차려 두소 (8)

화원에 가서 땅값을 받아다가 아기의 바지를 만들어 주려고 했더니 나 있을 때도 못하였는데 나 없어서 더욱 쉽지 않으려니와 (12/13)

아기 옷도 하여 줄 것이고 다른 데도 쓸 곳 있으니 빨리 와 내게 말 들어 가라 하소. 정네 바지는 해주었는가? 추워하던 일이 눈에 암암하여 잊지 못 하네 (23).

대원의 바지에 소음(솜)도 김치 담은 후에 각시님께 사뢰어 사람을 얻어 하도록 하소 (34).

교의에 (놓을) 뜯자리에 선(繪)할 것을 못 구하여 나로 하여금 구하라고 하시니, 명주에 자줏빛 물든 것이나 아청색 물든 것이나 아무 것이나 한 자 세 치만 보내소. 명주 없거든 교직(交織)에 물 든 것을

보내소. 온전한 옷감(服)이 없거든 비록 품을 땐 것이나마 보내소. 품을 땐 것이거든 다섯 자를 보내고, 품을 아니 째어 온전한 감이거든 한 자 세 치만 와도 쓸 것이니 짐작하여 보내소. 뜻자리 네 모서리에 선(綱, 단)을 두르되, 한 넥(=모서리)에 한 자 세 치씩 둘 것이니 품을 땐 것이면 다섯 자나 되어야 쓸 수 있을 것이고 품을 아니 째어 온전한 감이면 한 자 세 치면 째어 쓸 것이로세. 너비는 한 치 닛 푼이 들것이고 길이는 한 자 세 치가 들 것이니, 품 땐 그것이 바로 있거든 품 땐 것을 다섯 자만 보내고, 없거든 온전한 옷감 한 자 세 치를 보내소. 자주빛 실이나 다흥실이나 중에 아무 실이나 반의반 꾸리만 함께 보내소. (38)

근심이 하도 수고하여 있으니 여름살이 하여 입으라 하고 삼 두 단만 상으로 주소 (67)

꾸어 주었다가 받은 무명 한 필하고 매종에게 아기 받으려 갔던 무명 반 필하고 함께 한 필 반이면 넉넉히 이불을 지울 것이니 빨리 지어 자게 하소. 필반이 적거든 마흔 자 무명이 엊그제 구실(稅)로 바치자고 내 왔던 무명을 37자만 자르고 남는 것으로 보태 빨리 하게 하소. 몸이 깊이 병든 후면 무엇이 아까운 것이 있는가. 참말 말고 빨리 하여 덤게 하소. (75)

면화 나눌 치부, 큰댁에 18근, 골안댁 12근, 달이 어미 15근, 널진이 12근, 수개 닻근

무명을 놓아 팔아 먹을 것을 면해 하 어머니 어찌 할꼬. 큰 댁이나 달이네나 다 아니 주고 못할 것이고 모두 헤아리기는 다 적게 여기려니와 쓸 데는 많으니 비록 적게 여겨도 내가 적어 준 대로 받게 하되, 먼저 받은 것도 아울러 헤아려 받게 하소. 지금 주는 것도 함께 주지 말고 면화 따는 양을 보아 가면서 여러 번 나누어 주게 하소. 내 적은 것에 횟수를 적어 놓았으니 여러 번 준 것을 합해서 내 적은 수에 차게 드리소(102)

한편 아들이나 출가한 딸이 어머니에게 옷이나 베선 등의 바느질을 부탁하는 경우도 확인된다. 그와 반대로 딸이 어머니에게 바느질한 것을 보내드리기도 하고(133) 신발 같은 것을 장만하여 보내드리기도 하였다(146). 출가한 딸이 친정에 부탁하여 꽈씨 집안의 며느리(동생댁)가 그 일을 하게 되었으나 바느질이 늦어져서 애태우는 경우(113, 153)도 보인다. 요즈음도 출가한 딸이 친정 어머니에게 의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17세기를 살았던 진주 하씨와 딸들 사이에서도 그와 유사한 상황이 확인

된다.

결속 바느질 아들내 시키니 바느질 빨리 못 해 보내노라...흉대가 사흘거리로 아프니 바느질이 더욱 쉽지 아니하다 (114).

버선은 내 손수 기워 웠느니라 (116)

새 절 가시리라 하여 놀 투심 고쳐 보내는데 곱지 않습니다. 줄지는 않았는지. 동생들이 셀가 하 점의 하였던 것도 보내옵니다. 곱게 한다고 했지만 곱지 않습니다 (133)

동생님네에게 바느질 많이 보내였더니 못하여실 것이니 연고(緣故) 없거든 부디 빨리 했다가 내월의 태보기 가거든 보내소서. 그 품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갚으려 한다고 일러 주소서 (143).

신을 황녹피(黃鹿皮)로 곱게 하라고 시켰는데 백녹피(白鹿皮)로 하오니(=만들어 오니) 빛이 없사와 고치라 하였으나 아니 고쳐 주거늘, 난필 가는(細) 것과 함께 곱지 아니한 신과 베선을 보내옵니다. (땅이) 진 곳에서나 신으실까 생각하옵니다 (146)

보선 부디 기워 보내 하노이다 (156).

III. 남성의 수발(鬚髮) 관리와 복식류

곽주와 하씨는 각기 소례와 논공에서 기거하였기 때문에 꽈주는 부인에게 편지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물품을 보내도록 하였다. 필요한 물품 중에는 머리와 수염을 정리할 빗접을 비롯하여 이부자리, 옷가지, 책 등 다양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1. 수발 관리와 관련된 물품들

1) 거처를 옮길 때마다 챙겨야 했던 빗접

전통사회의 남자들에게 있어서 의관을 갖추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예기』『내칙(內則)』⁷⁾에는 부모를 섬기기 위해서 자식은 아침에 일어나 의관을 정제하는 일부터 시작하도록 하였다. 더욱이 「사소절(士小節)」⁸⁾에는 군자가 거울을 보는 것은 치장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의관을 바르게 하고 태도를 존엄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한 대목도 확인된다. 외모는 곧 그 사람의 정신 세계와 직결된

다고 보았던 것이다.

1637년 병자호란이 끝나고 청나라에 볼모로 잡혀 가던 오달제(吳達濟, 1609~1637)는 형 오달승(吳達升)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썼다.

‘불잡혀 가는 도중에 가장 필요한 것이 머리를 빗는 기구와 망건, 그리고 신발입니다’⁹⁾

청나라로 잡혀가는 도중 수많은 고초를 당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형에게 머리 벗는 기구를 보내달라고 하는 것을 보면 수발을 정리한다는 것이 당시 반가 남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꽉씨의 언간 중에는 부인 하씨에게 머리 정돈을 위한 도구들을 쟁겨보내라고 하는 내용이 여러 번 확인된다. 여행할 때 세면 도구를 기본적으로 쟁기듯이 당시 남성들도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길 때면 빗접을 쟁기는 것이 일반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불, 머개, 보단, 빗접, 수건 갖보에 든 재 자리 보 함께 싸서 연수에게 오늘 소례 웃골로 보내소 (59)

자리보 차려 보내소. 자리보 보낼 때 갖보에 벼루, 빗접, 수건, 책하고 자세히 차려 보내소. 보내는 것을 적어 보내소 (84)

빗접을 잊고 아니 가져 왔으니 다니는 사람하여 잊지 말고 부디 보내소 (86)

2) 당감투와 자리감투, 두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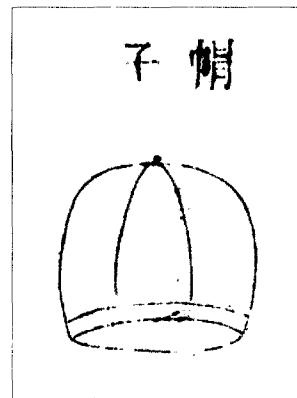
순천 김씨 언간¹⁰⁾에서도 확인되듯이 갓[笠子]은 당시 사대부들이 흔히 썼던 관모로 생각되지만 진주 하씨 묘 언간 중에는갓 명칭이 확인되지 않는다. 대신 ‘당감토(88)’라는 명칭과 ‘자릿감투(3, 89)’, ‘두건(59)’ 등이 보인다.

내 당감토 보내소 (88)

‘당감토’가 감토, 즉 감투와 어떻게 다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단지 감투와 무관하지는 않을 것으로 추측될 뿐이다.

중종 20년(1525) 7월의 한 기록에는 형조판서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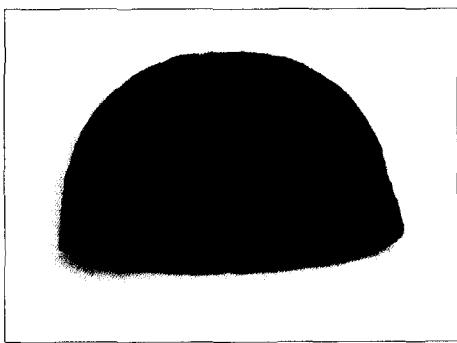
제상(曹繼商)이 필단 감투(官土)에 자적 겹칠릭[甲天益]을 입고 있었다고 묘사하면서 감투에 ‘모자(帽子)’라는 주석¹¹⁾을 달고 있다. 명대 말기의 문헌인 『삼재도회(三才圖會)』에 ‘모자(帽子)’가 도상(그림 2)으로 제시되어 있다.¹²⁾ 그 형태는 조선 전기, 중기 묘에서 흔히 출토되는 소위 ‘소모자’, 혹은 ‘육합모’와 같다. 『역어유해(譯語類解)』에서는 ‘소모자’가 곧 감투¹³⁾라고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감투라는 것은 곧 지금까지 보고서 등에 모자¹⁴⁾, 감투·소모자¹⁵⁾, 육합모¹⁶⁾라고 칭해졌던 모자와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림 2> 모자(『三才圖會』
衣服一卷)



<그림 3> 감투로 추정되는
元代의 모자



<그림 4> 모자(진주 하씨 묘 출토)
(柳喜卿·金美子, 1991:125)

감투는 조선시대 뿐만이 아니라 고려 말에도 사용되었다. 즉 우왕(禡王) 13년(1387)의 복제 규정에 각 영(領)의 위(尉)와 대정(隊正)이 감투(坎頭), 고정립(高頂笠)에 직령과 전대(纏帶)를 착용하도록 하였으며 반방(飯房), 수방(水房), 등축상소(燈燭上所)에게도 고정립과 전모(氈帽), 감투에 직령, 전대를 착용하도록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¹⁷⁾ 14세기 원대의 풍속화¹⁸⁾에서도 철릭에 감투를 쓰고 있는 인물(그림 3)이 확인된다. 그리고 직령에 감투를 쓴 인물들도 많이 묘사되어 있다. 고려시대 우왕 때의 복제와 일맥상통한다.

조선조 태종 16년(1416)에 외방의 향리가 관문 진퇴(進退) 때나 대소 사객(使客)을 영송할 때는 두건(頭巾)을 쓰고 보통 때는 감투를 쓰도록 하였다는 기록이 확인된다. 감투보다는 두건이 더 격식을 갖춘 관모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세종 28년(1446)¹⁹⁾에는 1품 양반 자제, 양천(良賤)의 초립을 진초립(眞草笠), 상초립(常草笠)으로 각각 규정하면서 감투[坎頭]는 상하 통용하도록 하였다. 성종 때는 추위에 고생하는 척후(斥候), 연대군(煙臺軍)에게 감투(甘套)를 하사²⁰⁾하기도 하였다. 또한 임란 전 순천김씨 묘의 출토 언간에서도 '감토'²¹⁾라는 기록이 확인된다.

한편 『국조오례의』 국흘조(1475)에는 왕의 습의(襲衣) 중 조라(毘羅) 수관(首冠)이 감투[坎頭] 제도와 같은데 이는 곧 복건(幅巾)이라고 한 기록이 보인다. 사대부의 습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복건

에 대해 조주(臣紂) 감투를 쓰도록 하였다.²²⁾ 그러나 복건을 감투와 같은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조선 전기 이석명(李碩明, 1513-1583)의 묘에서 복건과 감투가 모두 출토²³⁾된 것을 볼 때, 조선 전기에 이미 두 관모에는 분명한 구분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국조오례의』의 '복건'은 『가례』의 내용을 그대로 따르되, 당시 많이 사용되었던 감투를 대용하도록 한 것으로 이해된다.

조선 전기의 출토복식 중에 감투가 복건에 비해 자주 확인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 일 것이다. 감투는 김흠조 묘, 고운 묘²⁴⁾, 이응태 묘, 전 박장군 묘와 같은 남자 묘는 물론, 일선 문씨 묘²⁵⁾나 구례 손씨 묘, 진주 하씨 묘(그림 4)²⁶⁾같은 여자 묘에서도 수습되었다.

한편 당감토를 '唐敢頭'로 본다면 '큰 감투', 따라서 '소모자'에 대응되는 '대모자(大帽子)'와 연결시켜 볼 수 있다. 『역어유해(譯語類解)』²⁷⁾에 '대모자'를 '갓'이라고 했으며 『삼재도회(三才圖會)』에 대모(大帽)가 모정이 등글고 양태가 좁은, 조선 전기의 '갓' 형태로 제시되어 있음²⁸⁾을 볼 때, 당감투가 '갓[笠子]'을 의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아직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추후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당감투 외에 '자리감토', '두건' 등이 〈3, 89〉와 〈59〉에서 확인된다. 자리감투는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이불'과 함께 확인된다. 그래서 잠 자리와 관련된 관모 종류인가 추측을 해 보지만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후일의 과제로 미루고자 한다.

두건 역시 태종 때의 기록에서도 확인되듯이, 감투보다는 격식을 갖춘 관모로 판단되지만 그 형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아버님 자리(席)를 작은 조시에게 일러서 이불하고 요하고 자릿감투하고 베개를 해서 자세히 차려 꽉상이 풍세, 죄인이 셋을 시켜 지금 보내소 (3)

이불하고 자리감투하고 둇자리와 베개를 다 차려 이제 향교로 보내소 (89)

내 텔링하고 두건하고 ... (중략)... 오늘 소례 못골로 보내소 (59)

2. 복식류

한편 임란 전후의 남자 옷(²⁹)에는 단령과 직령, 철릭, 액주름, 중치막, 그리고 도포(³⁰) 등이 있었다. 그러나 진주 하씨 묘 언간에는 당시 가장 많이 착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직령'과 '철릭', '중치막'에 대한 언급만 확인된다. 단령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당시 괴주가 관직에 있지 않았으므로 입을 기회가 적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1) 의례복으로 입혔던 직령(直領)

직령은 17세기 전기 사대부들의 대표적인 옷(³¹)이었다. 특히 관직이 없는 사대부가의 남자들에게는 최고의 옷(³²)이었다. 17세기 전기의 문헌인 「가례언해」(家禮諺解)⁽³³⁾에도 관직없는 자 [無官者]의 상례나 훈례, 제례의 성장(盛粧) 예복으로 직령이 제시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세째 아들이 하씨에게 드린 편지(109)에는 제사에 입을 수 있도록 베를 잘 짜서 직령을 만들어 달라는 내용이 있다. 이 편지가 을유년(1645)의 것으로 무관자가 의례복으로 직령을 착용한다고 하는 「가례언해」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베 짤 것은 어제 보내셨습니까? (베 짤 것) 두 근으로 비록 여든 자나 이흔 자나 되는대로 하고, 새의 수(數)는 제 등급에 맞게 짜게 하여 빨리 단단히 짜서 한 감(材料)을 미리 베어 제사에 미처 직령(直領)을 하여 입게 하옵소서. 윗집 조스네 형제와 틱팅의 어미와 용임의 처에게, 내 말이라고 전언하셔서, 부디 흠 없이 쪽 고르게 짜게 하여 포대기 베로 옷을 하게 하옵소서. 씨실이 적거든 (양에) 미치도록 더 장만해서라도 부디 아흔 자나 넉넉하게 짜게 하옵소서. 웃웃 둘과 보 하나를 하여야 쓸 것입니다. 비록 짧 것을 오늘 보냈어도 또 철봉이를 일부러 보내어, 아흔 자로 넉넉하게 짜서 빨리 제사 날짜에 미쳐(及), 단단히 짜게 시키옵소서. 을유(1645) 시월 초 오일 자식 유창 살이(109)

직령은 깃이나 앞뒷길의 옆트임에 연결된 무의 형태를 보면 대체적인 시대를 알 수 있다. 17세기 전기의 인물인 김위(金緯)의 묘에서 출토된 직령(³⁴)은 깃이 깊깃이며 좌우 옆트임에는 삼각부와 사각무가 연결된 커다란 사다리꼴 무가 달렸는데 무의

윗부분을 삼각형으로 뾰족하게 접었다.⁽³⁵⁾ 뒷길에 무를 고정시켰던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착용시 무를 뒤쪽으로 자연스럽게 젖혀 놓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세째 아들(亨昌, 1617~1674)이 부탁한 직령(1645년)의 형태는 김위 묘의 직령과 유사한 형태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착장 모습은 장현광(張顯光, 1554-1637) 초상화⁽³⁶⁾의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2) '털링'으로 불렸던 일상복 철릭

언간 <59>에 괴주가 부인 하씨에게 보내라고 부탁한 옷과 물건들이 일거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철릭'과 '중치막'이 확인된다.

철릭은 고려 중기 이후 원나라 복식을 수용하면서 착용하게 된 옷으로, 상의와 치마 형의 하의가 연결된 독특한 형태의 남자옷이다. 또한 다양한 한자 명칭을 지니고 있는 옷이기도 하다. 당시 괴씨의 언간을 통해 볼 때 철릭은 '털링'이라고 불리어졌던 것이다. 1580년대의 순친 김씨 묘 출토언간⁽³⁷⁾에도 '털링(7건)', '털릭(3건)'으로 기록되어 있다. 적어도 충청도와 경상도 지역에서는 '털링'이라는 이름으로 동일하게 불리어졌음을 알 수 있다.

내일 새배 한훤당 祭를 나라에서 하시니 우리에게 그 祭에 참여하라 하니 오늘 소례로 도로 나가니 내 털링하고 두건하고 한수가 가져간 낡은 명지 등치막하고 이불, 며개, 보단, 빗접, 수건 갓보에 든 재 자리보 함께 싸서 연수에게 오늘 소례 옷골로 보내소 (59)



<그림 5> 김덕령(1567-1597) 묘 철릭
(文化財管理局 編, 1986, p.123)



<그림 6> 김위(17세기 전기 추정) 묘 철릭
(충북대학교박물관, 1995, 도 40)

조선 후기에는 철릭이 주로 무관복이나, 또는 왕이하 문·무관(文·武官)의 융복(戎服)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조선 전기에는 후기와 달리, 남자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착용했던 일상복이었다. 그런 까닭에 임란 전후의 남자 묘에서 가장 많이 출토되고 있다. 17세기 초, 직령이 격식을 갖춘 예복의 일종이었다고 한다면 철릭은 직령 보다 부담 없이 착용할 수 있었던 일상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철릭은 깃 형태와 상하의 길이나 비례, 그리고 소매의 형태 등을 통해 대략적인 시대를 알 수 있다. 광주와 혼인과 사망 연대를 기준으로 볼 때 1590년대 이후 1617년 사이의 철릭이 된다. 언간<59>가 1590년대 편지라면 임란 당시의 김덕령(金德齡, 1567-1597) 묘의 철릭(그림 5)과 유사할 것이고 만일 17세기 초의 편지라면 김위 묘의 철릭(그림 6)과 유사한 형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3) 임란 전부터 일상복으로 입혔던 중치막[中赤莫]

앞에서 다루었던 <59>와 더불어 <6, 71>에도 명주 중치막, 핫 중치막 등이 언급되어 있다.

명지 둥치막³⁶하고 보선³⁷하고 여개예 이를 녀허 잇 스쳐 보내소 (6)

내 핫둥치막 보에 싸 연수에게 보내소 (71)



<그림 7> 광해군(재위 1608-1623)의 중치막
(文化公報部·文化財管理局 編, 1985, p.19)

'둥치막', 즉 중치막은 조선 말기까지도 꾸준하게 착용되었던 남자 옷이다. 그 형태는 저고리와 유사하지만 다른 포처럼 길이가 길기 때문에, 좌우 겨드랑 아래로 길게 옆트임이 있다. 17세기 전기의 유물에서는 옆선에 삼각무가 확인되지만 후기에는 무가 사라지면서 하단의 폭이 좁아진다. 반면에 소매는 초기 유물의 경우, 저고리보다 약간 넓은 정도였으나 말기로 갈수록 다른 광수포와 마찬가지로 넓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중치막은 후대의 유물이 많이 남아있는 까닭에 조선 후기의 옷으로 인식되어 온 경향이 있다. 그러나 조선 전기 임란 전의 중치막 기록도 여러 건 확인되고 있다. 『목재일기(默齋日記)』의 중치막[中赤莫] (1553년),³⁸ 순천 김씨 묘 언간의 '둥치막'³⁹, 『쇄미록(瑣尾錄)』의 '中赤莫(1592년, 1597년)'⁴⁰이 그것이다. 따라서 중치막은 조선 전기에도 이미 착용되었던 옷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임란 전의 중치막 유물은 아직 보고된 바 없다. 현존 유물 중에는 17세기 초의 장기 정씨 (1565~1614) 묘 중치막⁴¹과 해인사 소장의 광해군(光海君, 1622) 중치막(그림 7)⁴²이 비교적 오래된 것이다. 진주 하씨 묘에서도 중치막 1점⁴³이 출토되었다. 언간에 보이는 광주와 중치막은 이를 중치막 유물의 형태와 거의 같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IV. 여성의 머리 치장과 복식류

1. 손님맞이 치례를 위한 가리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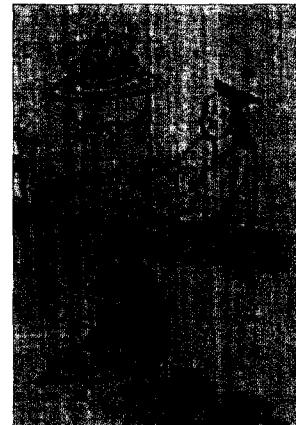
언간 <64>에는 집안 손님을 맞는 부인 하씨의 머리 치장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광주는 부인 하씨에게 형님이 하씨를 보러 가시니 대접을 잘 해 드릴 것이며 아울러 머리 꾸미고 '가리매' 즉 '가리마'를 써서 손님맞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는 당부를 하고 있다. 이 편지가 쓰여진 시기는 명확하지 않지만 내용으로 보아 하씨의 혼인 직후인 신혼 시절의 것으로 보인다.

아주버님이 오늘 가실 길에 우리에게 다녀가려 하시니, 진지도 옮겨 잘 차리려니와 다담상을 가장 좋게 차리게 하소. 자네를 보려고 가시니, 머리를 꾸미고 가리매를 쓰도록 하소.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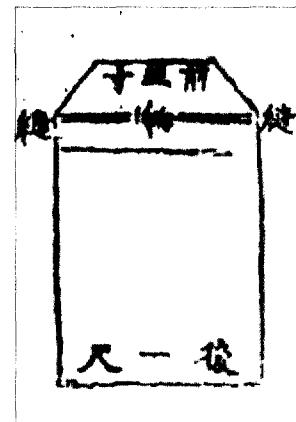
가리마가 언제부터 착용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조선 후기의 풍속화인 <청금상련(聽琴賞蓮)>에 기생이 가리마를 쓰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그림 8). 이보다 앞선 1630년의 기록화, <임오사마방회도(壬午司馬榜會圖)>에 관리들의 시중을 들고 있는 여자들에게서도 가리마가 확인된다(그림 9). 그 외에 김홍도의 풍속병풍 중 <설중행사(雪中行事)>와 신윤복의 <기생도(1805)> 등에서는 전모 밑에 가리마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림 8> 기생의 가리마(신윤복 풍속화, <廳琴賞蓮> 부분)



<그림 9> 시중드는 여성의 가리마(<壬午司馬榜會圖>, 1630)



<그림 10> 頭制(國朝續 五禮儀序例 困禮)

기록으로는 18세기 말 성조 때의 실학자였던 유득공(柳得恭, 1749-?)의 「경도잡지(京都雜誌)」⁴²⁾에서 가리마가 확인된다. 내용인 즉, '내의원과 혜민서에 있는 의녀(醫女), 궁조와 상의원에 있는 침선비는 지방에서 뽑아 올린 기생들로서, 잔치가 있을 때 가무를 하였다. 내의원의 의녀는 흑단(黑段) 가리마(加里麻)를 쓰고 그 외는 흑포(黑布) 가리마를 쓰는데, 이는 방언으로 며(器)이라고 하였다. 편지봉투[서부(書袋)]처럼 생겨서 머리를 덮는다'고 하였다. 또한 '장가 가는 신랑의 뒤를 쫓는 유모(乳

母) 역시 흑증(黑繪) 먹(幕)을 쓴다'고 하는데 '가리마'가 '먹'이라고 한, 앞의 내용으로 추측해볼 때 이은 '가리마'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처럼 그림이나 기록 등에서 의녀나 침선비, 기생, 유모 등과 같이, 신분 낮은 여성들이 가리마를 썼음이 확인되는 까닭에 지금까지 가리마는 신분이 낮은 여성이 사용하는 관모로 인식되어 온 경향이 있다.

그러나 꽈씨의 편지를 통해 17세기 초의 가리마는 반가 여성들의 성장용 머리쓰개였음을 알 수 있다. 아마도 가리마를 쓰고 아주버님을 접대하고 있는 하씨의 자태는 <그림 9>에 보이는 모습과 유사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세종대(1418~1450)의 『오례의(五禮儀)』에 의하면 조선 전기 국휼(國恤)에 왕비를 비롯한 궁중 여성들이 '두수(頭眉)'라는 관모를 사용하였다⁴³⁾고 하는데 마침 『국조속오례의서례(國朝續五禮儀序例)』(1744)에 두수의 도상(그림 10)⁴⁴⁾이 제시되어 있다. 그 형태가 풍속화에 나타나는 가리마와 유사하다. 조선 전기와 후기의 두수 형태에 큰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가리마는 조선 전기에도 착용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순천 김씨 묘 언간에 '갓매'라는 기록이 보인다. 조형법은 이것이 '갈음옷', 즉 나들이에 특별히 차려 입는 옷⁴⁵⁾이라고 주해(註解)를 하였으나 전후 문맥으로 보아 '가리마'일 가능성성이 있다. 그렇다고 하면 조선 전기에 가리마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

2. 여아의 외출복

언간 <91>에는 진주 하씨가 집안 어른들이 계신 소례에 아이를 데리고 갈 때 아이에게 입힐 옷들이 언급되어 있다. 이 옷들은 아이의 외출복이자, '성장'이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소례에서 "아기네를 데려 오라"고 하시더라 하니 넝네와 덕네를 못 데려 갈지라도 철례는 데려 가게 하소. 입은 것이 하도 없으니 연초록 물든 것으로 며구리 하고, 순개가 짜는 명주를 제 장옷 할 만큼만 베어서 자주색 물을 들여 장옷하고, 보라색을 가는

무명에 물들여 바지까지 하여 입혀 데려 가게 하소.
(91)

넝네나 덕네, 철례라는 아이들은 하씨의 딸들로 생각되는데 특히 '철례'는 시댁 어른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막내일 것으로 생각된다. 남편 꽈주는 철례에게 연초록색 저고리에 보라색의 고운 무명 바지, 자주색 명주 장옷을 만들어 입혀서 집안 어른들을 뵙도록 부인 하씨에게 당부하고 있다. 저고리, 치마에 장옷 차림은 일반 성인 여성들의 외출복이기도 하다. 여아의 외출복도 그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편지 중에는 바지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치마에 대한 언급은 없다.

1) 연초록 저고리

'더구리', 즉 저고리에는 다양한 색상이 사용되었지만 특히 여자용 저고리에는 초록색 계통이 흔히 사용되었다. <91>의 내용에서도 성인 여성과 마찬가지로 여아의 저고리에 역시 연초록색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형태도 성인 여성의 저고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말 어린 덕혜옹주가 궁중의 성인 여자와 같은 복장을 하고 있는 것⁴⁶⁾을 볼 때 그러한 추정은 어렵지 않다.

진주 하씨 묘에서 출토된 성인 여자용 저고리는 밖으로 내어 달린 목판깃에 허리를 덮는 정도의 길이이며 짧고 좁은 고름이 달려 있다. 동일 시기의 다른 묘⁴⁷⁾에서는 당코깃 저고리도 수습되지만 진주 하씨 묘에서 수습된 9점의 저고리는 모두 목판깃이었다.⁴⁸⁾ 아마 이 지역은 당시 유행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한양과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당시의 신유행이라고 할 수 있는 당코깃이 아직 수용되지 않은 상태일 것으로 짐작된다. 아이들의 옷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2) 보라색의 고운 무명 바지

저고리와 더불어 보라색 바지에 대한 언급이 있다. 아동복에 대한 당시의 자료가 드물 뿐만 아니라 또한 철례의 나이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바지였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나이가 어렸다면 풍차바

지 같은 유아용 바지를 착용하였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성인 여성의 바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진주 하씨의 묘에서 수습된 성인 여성용 바지에서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확인되었다. 바지 밑의 트임 유무에 따라서 구분해 볼 때 두 종류로 대별된다. 한 종류는 밑이 막힌 '합당고형'이고 다른 한 종류는 밑이 앞뒤로 트인 '개당고형'이다. 그리고 개당고형 바지는 좌우 바지 가랑이 트임에 소형 삼각무가 달린 것과 가랑이 트임 부분에서 허리말기에까지 커다란 사다리꼴 무가 달린 것으로 구별되었다.⁴⁹⁾

3) 자주빛 장옷

'장옷'은 여자들의 가장 대표적인 웃옷이다. 인간에 의하면 성인 여자들뿐만 아니라 여아들 역시 외출 시 장옷을 착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장옷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외출을 할 때 머리에 써서 몸 전체를 가리고 다니기 위한 옷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는 조선 후기의 풍습이다. 조선 전기의 기록 중에 바람이 너무 불어 장옷을 머리에 들려셨다고 하는 경우(1599년)⁵⁰⁾도 있기는 하지만 당시의 장옷에 달린 고름의 위치는 머리에 쓰는 옷이 아니라 착용하였던 옷임을 입증해 준다. 진주 하씨 묘에서 출토된 장옷의 고름도 실제 착용하고 여어서 묶기에 적합한 위치에 달려 있다.⁵¹⁾

언간 <91>에 의하면 꽈씨는 어린 딸에게 자주빛(91) 장옷을 입히도록 하였다. 언간 <146>에서 성인 여자의 보라색 장옷도 확인되지만 임란 전후의 기『록인 순천김씨 언간』⁵²⁾이나 『어우야담(於野談)』⁵³⁾에서 볼 수 있듯이 다른 색의 장옷보다 자주색 장옷이 흔히 확인된다.

그러나 조선시대를 통털어 본다면 다양한 색상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꽈씨 언간의 자주색, 보라색 외에 침향색(沈香色)⁵⁴⁾ 장옷도 확인된다. 그리고 16세기 중기의 일선 문씨 묘에서는 소색 모시 장옷과 더불어 아청색 장옷도 수습된 바 있다.⁵⁵⁾ 조선 후기 풍속화에서는 초록색의 장옷이 흔히 확인되지만 후기 유물 중에는 초록색 장옷과 더불어 남색 장옷⁵⁶⁾도 있다.

3. 색이 곱지 않아 막신이 되어버린 백록피 신발

<146>에는 여성용 황록비[黃鹿皮] 신발과 백록비[白鹿皮] 신발에 대한 언급이 있다. 당시 반가 여성이 신었던 신발의 재료와 색상, 그리고 색상에 대한 선호도 등을 알 수 있다. 즉 당시 여인들은 색이 없는 녹피 신보다는 노란 빛으로 물들인 고운 색의 녹피 신을 더 좋아했던 것이다.

녹비는 곧 녹피(鹿皮)로서 우피(牛皮)보다 부드러운 가죽이기 때문에 옛부터 고급 신발에 사용되었던 재료이다. 출가한 딸은 본래 고운 황녹피 신발을 만들어서 친정 어머니께 보내드리고 싶었으나 아마도 염색된 녹피가 없어서인지, 신발 만드는 사람이 백록피 신발을 만든 모양이다. 색상이 좋지 않아서 신발을 만든 후 색을 고쳐보려고 했으나 결국 고치지 못하고 그냥 보내드린다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젖은 땅에 신는 막신으로나 신으시라고 덧붙였다. 어머니가 좋아하실 신발을 보내드리고 싶었으나 그렇지 못한 것을 보내드려서 아쉬워 하는 딸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다.

V. 기타 의생활 풍습

1. 옷감과 색상

1) 화폐 역할을 했던 옷감과 옷감 재료

우리 나라에서 동전이나 저화(楮貨) 등과 같은 명목화폐(名目貨幣)가 유통 수단으로 사용되어 온 것도 그 역사가 짧지는 않지만⁵⁷⁾ 그보다 훨씬 오랫동안 화폐로 사용되어 온 것이 정포(正布)라고 하는 옷감이다. 전통사회에서 옷감은 옷을 만드는 용도로만 사용되었던 것이 아니라 물건을 구입한다는 세금을 내기 위한 화폐로도 사용되어 왔다. 세종 때는 화폐로 사용하는 베 1필의 길이를 35자로 하고 양쪽 끝에 관청인장을 찍도록 하였다⁵⁸⁾고 한다.

임란 전후에도 여전히 저화나 동전보다는 베를 화폐 용도로 많이 사용하였다. 꽈씨 인간류에서도 그러한 사정은 잘 나타난다. 수고의 대가로 삼베의

원료인 삼[麻]을 주는 내용(67)도 확인된다. 또 무언가의 대가로 무명을 받았으나 일이 잘 안되어 받은 무명을 돌려주어야 할 경우가 생길지도 모르니 일이 완전히 마무리된 후에 사용하라고 당부하는 모습도 보인다(86). 화폐용으로 제작된 정포가 아니어도 경제적 교환가치가 있는 옷감과 옷감의 재료는 화폐 기능을 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02〉 면화분급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목화 농사를 함께 짓고 그 대가로 면화를 나누어 주는 것 역시 면화가 화폐 기능을 한 경우라고 하겠다. 〈102〉를 보면 면화를 수확하여 그 농사에 관여했던 큰댁에 18근, 골안댁에게 12근 등등, 일의 양이나 기타 조건 등에 따라 면화를 분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오늘 받은 무명도 빨리 쓰지 말고 스무날이나 보름이 지나거든 쓰소. 행여 그 사람이 도로 무르려고 오거든 무명 도로 주게 되거든 내가 해 준 글월도 도로 받고 제 무명을 주게 하소 (86)

씨 밭을 무명 없어 못 보내니 미처 보낼 것이니 두 필의 시나 마화 두소서 하오니 가져온 병 둘스니 하나 가노이다 (149)

실 밤으려 하다가 못 밤고 무명 한 필이 가니 실을 밤으시거나 무명을 세 필이나 주거든 밤으소서 (159)

2) 옷감의 종류와 길쌈 관행

여유있는 반가(班家)에서는 수입한 중국산 옷감 등, 고급 소재를 사용하기도 하였지만 일반 반가나 농가의 경우엔 가정에서 옷감을 직접 짜서 옷을 만들여 입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반가라고는 하지만 꽉주가 관직이 없었기 때문인지 고급 옷감은 거의 사용되지 않은 듯 하며 언간에 나타난 옷감 중에는 명주가 가장 좋은 옷감이었다. 광해군대의 영의정을 지낸 기자현(奇自顯, 1562-1624)의 부실, 장기정씨(1565-1615)의 염습의로 사용된 다양한 비단류와 비교해 볼 때 계층간의 커다란 차이가 확인된다.

꽉씨 집안에서 사용되었던 소재와 그 재료는 대략 명주, 교직, 무명, 면화/솜, 삼베, 삼, 모시 등이다. 이러한 소재들의 사용은 꽉주의 집안이 비교적 소박한 의생활을 영위하였음을 말해 준다.

명주는 중치막과 장옷, 교의의 선 장식 등에 사용되었는데, 〈91〉에 의하면 '순개'라는 인물이 명주를 깠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뽕 잎 따는 이야기(38), 오월누에에 대한 이야기(150)도 보인다. 특히 출가한 딸의 집에서는 누에를 쳐서 명주 길쌈을 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오누웨(오월누에)나 쳐서 명주 쓸 것이나 (150)

당시 유통되었던 명주는 10~11세[升], 13세 정도로 언급되고 있는데 고운 정도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커졌다. 즉 10·11승 명주는 쌀이 한 말, 즉 10되어 있고, 13승의 명주는 쌀이 16되라고 한다(161). 3승 차이에 여섯 말의 차이가 있다. 13승의 명주를 사려면 10승 명주의 반 필이 넘는 값을 더 치루는 것이 된다.

명지 설 거슨 품 바풀 곳은 없고 가까스로 녀셔 달게 세 대를 주워시되 열 새, 열한 새면 한 마리이고 열식 새면 빨 말 엿되라 하니 (161)

한편 명주 다음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생각되는 교직(交織)이라는 것이 있다. 교직이란 경·위사에 각기 다른 종류의 실을 사용하여 직조한 직물을 말한다. 『고금석림(古今釋林, 1789)』에는 경사에 주사(紬絲)를 사용하고 위사에 면사(綿絲)를 사용한 것을 교직⁵⁹⁾이라고 하였다.

무명은 아이의 바지(91)와 성인 여성의 장옷(146)에 사용했다. 특히 '고운', '가는'이라는 수식어도 확인된다. 그리고 꽉씨 주변에서는 다른 옷감보다 무명이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꽉주의 집안에서 면화 농사를 하였기 때문일 것이며 그래서 꽉씨 집안에서는 길쌈도 다른 것 보다 무명 길쌈을 많이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김서방이 만들어 준 물레로 집안의 딸들이 무명잣는 수업을 받았음(12/13)도 알 수 있다. 그리고 길쌈을 위한 기구로 물레(12/13)와 더불어 실것(81)이라는 것도 확인된다.

면화는 아기시더러 봉하여 보내네. 면화는 일곱 근 어덟 양. 실것 두근 넉 낭이라하네. (30)

면화 아니 땐 전에 제곱 나교더 하니 자네 뜻은
어떠한고. 자세 짐작하여 기별하소. 다만 종이 적으
니 면화 안 땐 전에 못 미쳐 짐을 지울까 하네 (31)

오예 소래댁 면화 든 잘리 하니 봉한동 만동하여
하여 하내. 실것도 가져오라 하시는가 아기시 보내
라 하더니 하고 보내네 (81)

무명 짠 것 두 굿띠에 (132)

삼베도 조선시대에 널리 사용되었던 옷감 중의
하나이다. 직령의 소재로 깃베가 사용되었지만
(109) 꽈씨 집에서는 삼베 길쌈을 직접 하지 않았
던 것으로 짐작된다. 언간 내용을 볼 때 현풍에는
각 집마다 짜는 직물이 어느 정도 분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문적으로 옷감을 짜는 집이 있었
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풍난의 계집에게 삼
베를 짜게 했다는 내용도 보이고(8) 옷집 조씨 형
제집, 용임집 등에 삼베를 직조하도록 하라는 지시
도 보인다(109).

삼을 못 일어 하니 더란 삼 한 단만 보내소 (85)

모시에 대한 언급은 한 건(66) 뿐이다. 이 지역
에서 절마 생산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요즈음은 모시를 상례용 옷감으로 사용하기
를 꺼려하지만 언간에서는 당시 상례용품으로 사용
했던 모시 흙이불, 즉 단금(單衾)이 확인된다.

초상 제 헛니불 하여서 쓰지 않은 모시 일곱 자
하고 들기름 한 흡하고 (66)

한편 언간 중에는 옷감이나 그 재료의 길이, 무
게 등을 재기 위한 도량 단위들도 확인된다. 무명의
길이와 관련하여 '필(匹)', '굿'(132) 등의 단위가 사
용되었음을 알 수 있고 그 외에 '자', '치' 등도 확인
된다(38). 면화의 양(量)을 재는 단위로는 '근'과 '양'
이 사용되었다(30). 삼베 재료인 삼에 대한 언급에서
는 삼을 '단'으로 묶어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85).

3) 옷감의 색상과 염색

옷감의 색상에 대해 언급한 경우가 많지는 않으

나 연초록색, 보라색, 자주색, 붉은 색, 검은 색, 아
청색, 다흥색 등의 색명이 확인된다. 물론 소색(素
色)인 흰색은 언급되어 있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색
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을 것이다.

여아의 저고리에 연초록색, 바지에 보라색, 장옷
에 자주색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91) 가는 무명
장옷감에 보라색을 염색해 달라고 하는 경우(146)
도 보인다. 그리고 〈물목기〉에 현훈과 구의를 만들
기 위한 검은 물 옷감과 붉은 물 옷감이 있으며
(38)에는 자주, 아청색 명주도 확인된다. 그리고 자
주실, 다흥실 등 실의 색상도 언급되어 있다.

순천 김씨 언간 중에는 '장의골'이라는 곳에 염색
하는 집이 확인되었다.⁶⁰⁾ 그러나 진주 하씨 묘 언
간에는 염색에 대한 과정이나 염색을 하는 사람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다. 단지 '각시님'이라는 사람
(34)과 하씨의 머느리로 추정되는 '동생네'가 염색
을 하였음(146)을 알 수 있는데 주로 필요에 따라
집에서 염색한 것으로 짐작된다.

물 들일 일로 인하여 이리 요란해 있으니 이제는
조그만 일이라도 다 각시님께 기별 하여 하게 하소.
옷 안도 오나든 즉시 물드려 달라 하고 각시님께 기
별하소 (34)

가는 무명이 내 장옷 감이니 동생님네 물들이는
보라 드렸다가 시월에 보내주십시오 (146)

2. 상례용 현훈(玄纁)과 구의(柩衣)

〈96〉 물목기는 상례에 사용할 옷감을 적어 놓은
것으로 보인다.

현훈, 구의 합해서 일흔 자, 검은 물 47자, 붉은
물 20자 (96)

현훈이란 의례 때 예물로 사용되는 옷감을 말한다.
특히 상례에서는 하관(下官) 할 때 관 위에 현훈
을 올려놓는다. 『가례(家禮)』⁶¹⁾에 의하면 상례용으
로 각각의 길이가 1장 8자인 현색 옷감 6점[玄六]
과 훈색 옷감 4점[纁四]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상례비요(喪禮備要)』⁶²⁾에도 『가례』에
서 제시한 현훈의 치수와 동일한 1장 8자로 제시하

고 있다. 또한 구의[僕衾]는 관을 덮는 덮개의 일종으로, 상하로 나누어 두 색의 옷감을 이어서 만드는데 윗부분은 치색(緇色), 아랫부분은 정색(頴色)으로 만든다고 하였다. 물목기에 의하면 현색과 치색은 '검은 물'로, 훈색과 정색은 '붉은 물'로 통일하여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물목기에 적힌 검은 물 47자, 붉은 물 20자는 현 훈과 구의에 사용될 옷감으로 추정된다. 구의는 관 길이에 맞추어 만드는 것이므로 성인의 경우, 그 분량을 각각 6자 정도씩 사용한다고 하면 나머지 옷감으로 현훈을 만든다고 할 때, 각각 하나의 길이는 예서의 치수에 비하면 짧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물 목기에 적혀 있는 옷감의 양은 현훈의 개수와 치수를 적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의미한다.

3. 여자들의 일거리, 바느질과 세탁

바느질과 세탁은 집안 여성들의 작업으로 이루어졌다. 진주 하씨를 비롯해서 딸, 며느리가 주로 이 일을 하되, 소례택의 경우처럼 인근에 사는 여성들이 맡아하기도 하였다. 적령(109)과 투심(133)⁶³⁾, 버선(6, 116, 156) 바느질과 누비옷·누비바지(6)의 세탁 관련 내용이 확인된다.

누비옷 누비바지 빨았거든 보내고 아니 빨았거든 보내지 마소. 가서 버선은 여기서 기워 주시니 보선은 보내디 마소. 낡은 버선 하나 가네 (6)

버선 내 손수 기워 왔느니라 (116)

...보선 부디 기워 보내 하노이다...(156)

곽주와 하씨는 각기 다른 곳에서 기거하는 날들이 많았기 때문에 곽주는 자신이 입었던 옷을 인편으로 하씨에게 보냈다. 그러면 하씨는 세탁해서 다시 바느질한 후 남편에게 보냈다. 물론 버선까지도 하씨가 손보아 주었으나 간혹 버선 정도는 곽주가 소례에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었다(6).

특히 언간에는 버선 바느질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한다. 19세기 초엽의 『규합총서(閨閣叢書)』에는 동지에 양기를 받으면 좋다고 하여 버선본을

동짓날 짓도록 하는 내용⁶⁴⁾이 보인다. 또한 윤 5월 5일(1873년) 단오에 딸이 친정 부모의 버선본을 뜨고 그 본 위에 좋은 글을 적어 보내 드린 사례도 있다.⁶⁵⁾

그러나 꽈씨 언간에서는 버선과 관련된 특별한 민속관행은 확인되지 않는다. 단 하씨가 많은 양의 버선을 바느질한 것으로 짐작되는데 출가한 딸의 버선은 물론, 딸 집 식구들의 버선까지도 기워주었음을 볼 수 있다(156). 평소에 많은 버선을 만들어 놓았던 때문인지 진주 하씨 묘에서는 총 18켤레나 되는 많은 양의 버선이 수습되기도 하였다.⁶⁶⁾

VI. 맷음말

경북 달성군 소재의 진주 하씨 묘에서 출토된 17세기 전기의 현풍 꽈씨 집안의 언간을 중심으로 당시 의생활의 일면을 살펴보았다. 한 집안의 언간 자료를 토대로 한 고찰이기에 17세기의 보편적인 의생활 양상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이러한 연구의 결과들이 축적된다면 선조들의 생활문화를 더욱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고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세탁이나 길쌈, 바느질 등과 같은 실질적인 노동은 여성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의생활의 전반에 대한 통솔권이나 결정권은 부인이 아닌 남편이 전적으로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옷감 생산이나 옷의 제작 시기와 관련된 의사 결정은 물론, 부인의 치장에 대한 조언을 비롯하여 자식들의 옷 걱정까지 그 내용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당시 남자들은 의관을 정제한다는 차원에서 수발 관리를 위해 필요한 빗접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었으며 관모로 당감투, 자리감투, 두건 등을 썼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웃옷 중 직령은 관지 없는 사대부의 예복으로 제사에 착용된 반면에 철릭이나 중치막은 일상복으로 널리 착용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셋째, 여성의 의생활에 관한 내용 중 가리마에 대한 새로운 내용이 파악되었다. 조선 후기의 신분 낮은 여성들이 쓰는 관모로 이해되었던 가리마가 17세기 전기에는 반가 여성의 성장용 관모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신발에는 황색과 백색 등의 녹피가 사용되었으며 특히 황녹피의 신발을 선호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여아의 외출복으로 연초록 저고리에 보라색 고운 무명 바지, 그리고 자주색 명주 장옷 등이 확인되었다.

다섯째, 옷감은 명주와 교직, 무명, 삼베, 모시 등이 다양하게 사용되었으며 옷감에 대한 도량 단위들은 펄, 굿, 자, 치, 그리고 재료의 무게에는 근과 양이 사용되었다. 또한 삼 뜶음의 단위로는 단을 사용하여 그 당시에도 지금과 같은 단위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물레와 실것 등의 직기 관련 도구들의 명칭도 확인되었다. 옷감 중에서는 특히 명주가 좋은 옷감으로 사용되었으나 그 사용은 많지 않았고 모시 사용은 특히 다른 옷감에 비해 적었다. 꽈씨 집안에서 면화를 재배했기 때문에 무명이 흔히 사용되었으며 화폐 용도로도 무명이나 면화가 자주 사용되었다. 그 외에 오월누에를 길러 명주를 짜기도 했다. 염색은 필요에 따라 집에서 직접 행했으며 확인된 색명으로는 연초록, 보라, 자주, 붉은색, 검은색, 아청색, 다흥색 등이 있었다.

여섯째, 바느질과 세탁은 집안과 그 주변 여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출가한 딸이 친정 집에 바느질을 부탁하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버선 제작과 수선에 관련된 바느질이 많은 양을 차지하였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통해 17세기 전기 지방 반가의 의생활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며 내용 중 아직 밝히지 못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의 연구를 통해 보완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1) 건들바우박물관 편.『晉州河氏 墓 出土文獻과 腹飾 調査報告書』. 1991. 건들바우박물관(건들바우박물관은 현재 '한국무속박물관'으로 개명되었다.) 이 보고서(93쪽)에 따르면 서간류 외에 長衣(4점), 창의(1점), 저고리(9점), 치마(2점), 버선(18켤레), 속곳(14점), 바지(여, 3점), 요(2점), 이불(3점), 베개, 명목, 모자, 뜻자리, 빗접과 틀(각 1점), 옷감(10점), 파손된 옷(10여 점) 등이 수습되었다고 한다.
- 2) ①백두현, '17세기초의 한글편지에 나타난 생활상',『문헌과 해석』통권1호, 문헌과 해석사, 1997, pp.73-83. ②백두현, '〈현풍 꽈씨 언간〉에 나타난 17세기의 習俗과 儀禮',『문헌과 해석』통권3호, 1998, pp.72-91. ③백두현, '17세기의 〈현풍 꽈씨 언간〉에 나타난 민속신앙',『문헌과 해석』통권6호, 1999, pp.47-60. ④백두현, '〈현풍 꽈씨언간〉에 나타난 질병과 그 치료',『문헌과 해석』통권14호, 2001, pp.170-186.
- 3) 백두현 교수(경북대학교)가 1997년 발표한 판독문과 그 후 출판을 위해 보충 정리한 판독문 자료를 본 연구에 활용하였다. 백두현,「晉州河氏墓出土〈玄風 郭氏 謂簡〉判讀文」,『어문총론』제31호, 1997, pp.19-88. 원문 뒤에 붙인 편지 번호는 백두현 교수가 사용한 원전 번호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인용문은 본 연구자가 관련있는 부분만 발췌한 것이다. 그리고 지면 관계상 원고 중에 인용문이 이미 제시된 것에 대해서는 재인용되어도 다시 실지 않았다.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신 백두현 선생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 4) 金一根,「晉州河氏 墓出土文獻의 概觀」, 건들바우박물관 편, 앞책, 1991, pp.11-13. 13쪽에는 현풍 꽈씨 일가의 관련 세계표(世系表)가 제시되어 있다.
- 5) 백두현 교수는 진주 하씨와 나이가 비슷했던 전처 소생의 장남과의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6) 李章佑,「退溪 與子書 試考」, 檳國大學校 附設 東洋學研究所 편,『東洋學』第三十輯, 2000, pp.45-69.
- 7) 『禮記』卷第十二 「內則」 ○...子事父母 雞初鳴 咸盥漱櫛笄笄衣紳...
- 8) 李德懋,『青莊館全書』, 1775,「士小節」卷之一 士典 ○君子之覽鏡 整衣冠 尊瞻視 非事妖冶也...
- 9) 조연희,『우리 옛글 백가지』, 현암사, 1997, p.400.
- 10) 조향범,『註解 순천김씨묘출토간찰』, 태학사, 1998, p.628, p.769.
- 11) 『中宗實錄』卷五十四 五十三 '...繼商則着 匹段甘土(帽子也) 紫的甲天益...'
- 12) 王圻,『三才圖會』, 1607, 衣服一卷 二十三 ○帽子
- 13) 鄭昌周 外,『譯語類解』, 1690, 上 四十三 服飾, '小紗帽 罩子즈 ○감토'
- 14) 柳喜卿·金美子,「服飾篇」, 건들바우박물관 편, 앞책, 1991, pp.124-125.
- 15) 이은주, '金欽祖 분묘의 출토복식을 통해 본 조선전기 의 염습의에 관한 고찰', 榮州市 편,『判決事 金欽祖先 生合葬墓 發掘調查 報告書』, 1998, p.221, pp.314-315.
- 16) 이순원 외,『이석명(李碩明) 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서울대학교 박물관, 2000, p.72.

- 17) 『高麗史』卷七十二 十三~十四
- 18) Chu Yu, 'Street Scenes in Peace Time', Bradley Smith & Wan-go Weng, *China: A History in Arts*, Doubleday & Co., 1986, p.205.
- 19) 『世宗實錄』卷第一百十二 二十七 ○壬辰... (중략)... 第四條一品兩班子弟皆着眞草笠... (중략)... 其餘各人良賤勿論 皆着常草笠... (중략)... 通着坎頭...
- 20) 『成宗實錄』卷第二十五 五 ○戊寅 ○諭永安北道節度使魚有沼... (중략)... 又念斥候煙臺軍蒙犯霜雪難苦莫甚今送毛衣三十 防衣二百 翻巨知三 甘套十 耳掩二十七 帽其分授之
- 21) 조항범, 앞책, 1998, p.487.
- 22) 『國朝五禮儀』卷之七 凶禮 十一 首冠 : 用皂羅製如敢頭 卽幅巾 『國朝五禮儀』卷之八 凶禮 大夫士庶人喪儀 七十四에도 幅巾에 皂紬를 사용하는데 그 제도는 김투와 같다 기록이 있다.
- 23) 이순원 외, 앞책, 2000, p.77.
- 24) 안명수, '출토복식의 종류 및 특징', 光州民俗博物館 편, 『震川 高雲 출토유물』, 2000, p.69, pp.116-117.
- 25) 이은주, '일선문씨와 이응태 묘 출토복식 고찰', 안동대학교 박물관 편, 『안동 정상동 일선문씨와 이응태 묘 발굴조사 보고서』, 2000A, pp.197-198.
- 26) 柳喜卿·金美子, 앞글, 1991, pp.34-35.
- 27) 鄭昌周外, 앞책, '大だ帽笠子ズ○갓', 1690.
- 28) 王圻, 앞책, 二十 ○大帽, 1607.
- 29) '웃옷'이라는 명칭은 〈109〉에서 확인된다. 17세기 당시에도 '웃옷'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 30) 조선 전기 도포 기록(1564년)은 『忘憂堂全書』(郭忘憂堂記念事業會 編, 1987 : 715)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고 근래 이석명(李碩明, 1513~1583) 묘에서 아청색 명주 겹도포가 출토됨으로써 조선 전기의 도포 존재가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이순원 외, 앞책, 2000, pp.33-37.
- 31) 『家禮彙解』 卷之一 三七
- 32) 충북대학교 박물관 편, 『우리나라 16.17세기 출토복식』, 1995, p.40.
- 33) 이은주, '道袍 양식의 발전에 대한 갈등·기능론적 분석',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p.105.
- 34) 趙善美, 『韓國肖像畫研究』, 悅話堂, 1994, 圖119.
- 35) 조항범, 앞책, 1998, p.140, p.531.
- 36) 李文健, 『默齋日記』上, 國史編纂委員會, 1998, p.579, 嘉靖 三十二年 正月 三十日 丁未 '子婦造我紬編中赤莫, 密密縫線上送'
- 37) 조항범, 앞책, 1998, p.182, p.507.
- 38) 吳希文(李民樹譯), 『瑣尾錄』, 上(1592年 10月 5日), 下(1597年 7月 3日)
- 39) 이은주, '長簪 鄭氏(1565-1614) 墓의 출토 복식과 기타 유물', 안동대학교 박물관 편, 『포항 내단리 장기 정 씨 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2000B, pp.57-58.
- 40) 文化公報部·文化財管理局 編, 『文化財大觀: 重要民俗資料篇 下』, 1985, p.19. 보고서에는 '直領으로 명명되어 있으나 추후 '중치막'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41) 柳喜卿·金美子, 앞책, 1991, pp.8-9. 이 보고서에는 '창의'라고 하였으나 창의 중에 중치막이 포함되므로, 구체적인 명칭으로는 '중치막'이라고 할 수 있다.
- 42) 柳得恭, 『京都雜誌』○聲伎 ○婚儀
- 43) 『世宗實錄』 卷一百三十四 五禮 凶禮儀式 服制
- 44) 『國朝續五禮儀序例』 凶禮 國恤服制圖說 喪服圖說 四十頭帶
- 45) 조항범, 앞책, 1998, p.103, p.624. 저자는 그룹이 '갈음', 즉 '갈음옷(나들이할 때 특별히 차려 입는 옷)'을 뜻한다고 하였으나 머리덮개인 '가리마'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언간 14〉에 무명 1필로 가리매를 사라고 하였는데 특히 비단 옥이 촘촘하고 두껍고 붉은 것으로 하라고 하였다.
- 46) 金用淑, 『朝鮮朝 宮中風俗 研究』, 一志社, 1987, 사진 자료
- 47) 경기도박물관 편, 『조선의 옷 매무새』, 2000, p.6.
- 48) 柳喜卿·金美子, 앞책, 1991, pp.10-11.
- 49) 위글, p.25. 보고서에 의하면 진주 하씨 묘에서 수습된 바지는 모두 성인용으로 17점이었다. '바지'로 분류된 합당고형 바지 3점과 '속곳'으로 분류된 합당고형 바지가 14점이다.
- 50) 吳希文, 앞책, 下 第七 己亥 三月 二十九日
- 51) 柳喜卿·金美子, 앞책, 1991, p.97. 실측도 참조
- 52) 조항범, 앞책, 1998, p.108, p.406, '당옷을 지최(芝草)로 염색한다'(p.108), '흰 당옷'(p.406)
- 53) 柳夢寅, 『於于野談』, 宗教篇, 1622, ○副提學 柳瀟大夫 人李氏... (중략)... 婦人紫色長衣也... ○洪仲成... (중략)... 有婦人盛粧 衣身紫色長衣 帶青段長大帶...
- 54) 吳希文, 앞책, 下, p.246., 丁酉(1597) 十二月 十七日, 침향색은 황흑색, 즉 짙은 황색이나 어두운 황색 정도로 추정된다(中國文化大學 編, 『中文大辭典』 五, 1985, p.941, '沈香色 謂黃黑色也')
- 55) 이은주, 앞책, 2000A, pp.193-194.
- 56) 文化公報部·文化財管理局 編, 앞책, 1986, p.72.
- 57) 元裕漢, 『화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민족문화대백과』 25, 1994, p.363.
- 58) 『世宗實錄』 卷二十三 十三
- 59) 李義鳳, 『古今釋林』, 1789, ○交織 交織者以綿絲爲緯 紬絲爲經...
- 60) 조항범, 앞책, 1998, p.595.
- 61) 朱憲, 『朱子家禮』, 1169, 卷五 喪禮二 十二 ○主人贈玄六纏四 各長丈八尺...
- 62) 『喪禮備要』下 十三 ○主人贈玄纏各丈八尺.... 上 十

三 ○食...僕食質殺之裁 猶冒也 上以繙 下以賴連之乃用也

63) '투심'은 인간 내용으로 보아 복식명으로 짐작되는데 정확하게 알 수 없다.

64) 憑虛閣李氏(鄭良婉 譯註), 『閨閣叢書』, 寶晉齋, 1984, p.135.

65) 홍운표, '버선본에 담은 효심', 『문헌과 해석』, 통권13호, 문헌과해석사, 2001, pp.27-31.

66) 柳喜卿·金美子, 앞책, 1991, p.121.